

# 2019년도 제1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16.(화요일), 11: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전용준(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0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502건(안건번호 제2019-70038호~72289호)
  - 회의결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무단 전재한 칼럼 게시물 1건(안건번호 제2019-70038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인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일본 만화 번역물을 제공하는 게시물 1건(안건번호 제2019-70039호)은 이용분량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이러한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500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17회 저작권보호 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10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6페이지 상단의 사이트 명칭 및 URL 주소의 공개 여부, 7페이지 하단의 게임명, 게임이 제공되고 있는 합법 사이트 명칭 공개여부에 대해서 질의함
- A 위원 : 6쪽의 사이트명과 주소는 비공개하고, 7쪽의 게임명 등은 공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임
- B 위원 : 사이트 운영자를 위하여 서버공간을 제공 및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호스팅사업자가 저장서비스제공자로서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으로 '웹호스팅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로 표현해야 할 것임
- A 위원 : 이견 없음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일부 문구를 '웹호스팅사업자'로 바꾸고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이트 명칭과 URL 주소는 가리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70038호~7228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5,502건임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70038호는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민원인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칼럼을 무단 전재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되어 있어 민원인의 글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7003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게시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시물 대부분은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한 아이디 이용자가 업로드한 것임

심의위원회는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게시물은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이에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통화를 하였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하였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 원 글 작성자와 직접 링크를 붙여 출처 표시를 하였기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음

보호원은 출처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글 전체를 데드카피한 행위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을 준수할 의도로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겠다고 진술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실익이 없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가 되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 침해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시정권고 요청이 용이하지 아니한 측면을 고려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A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무단으로 복제·전송한 칼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인 점을 고려할

때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70038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7003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해 신고한 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국내에 정식 출간된 일본 만화 한 화 전체분량의 번역본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직접 번역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게시자가 직접 번역하였다고 보아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면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만화 저작물 원본 자체를 복제 및 전송하고 있어서 자막을 직접 번역하였을 여지가 있더라도 시정권고 대상임에는 이견이 없음
- A 위원 : 일본 만화 번역물은 원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전송한 것이므로 해당 저작물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70039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70040호~7228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19-70040호~72289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A 위원 : 데드카피하여 전송한 사안들이므로 해당 저작물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70040호~7228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70038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2019-70039호~72289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

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1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23.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박성호